

2014년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출제 포인트				
출제 영역		경찰(1차)	경찰(2차)	비교
1편 의의	형소법의 법원,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소법의 이념·구조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2편 수사	수사 기본 이론	수사기관·피의자· 자문위원	㉠((피내사자 : 피의자 개념)) ㉠[전문수사자문위원]	
		수사조건(합정수사 등) ★ 수사단서(고소 등)	㉠합정수사	
	임의수사 및 기술적 수사		㉠고소 ㉠피의자신문 ㉠현행범체포(학교전담)	
	대인 강제 처분	체포 구속	㉠[구속]	
		보호제도	㉠접견교통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보석
	대물 강제 처분	압수·수색·감중	㉠절차 및 영장주의 예외	㉠압수·수색절차(학교전담)
		증거보전·증인신문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증거보전
	수사 종결	통지·고지 불복(재정신청) 기소후 수사		㉠[재정신청]
3편 기소	공소 일반(공소권남용)			
	공소 제기	기본원칙 및 방식	㉠공소사실 특정	
		효과 공소시효	㉠공소제기의 효과(학교전담) ㉠[공소시효]	
4편 공판	기초 지식	실체·절차면·이론론 소송조건·소송행위 소송서류·송달		
		법원		㉠관할
		검사 피고인 보조자(변호인)	㉠변호인	㉠진술거부권 ㉠증거개시
	심리 범위	공소장변경 공소취소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기본원칙 공판준비 공판정구성 공판기일		㉠공판준비절차
	증거	증거조사	㉠증거조사의 이의신청 ㉠증인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심리특칙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갱신
		사설(엄격한 증명)	㉠[엄격한 증명의 대상]	
	증거	★ 증거능력	㉠특수매체기록(녹음)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개념 및 재전문증거 ㉠증거동의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탄핵증거 ㉠314조
		증명력	㉠((자백보강법칙))	
	재판	중국재판 기판력		㉠기판력
	상소	★ 통칙 각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비상구제절차(재심)			㉠재심
6편 특별 집행	특별 절차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명령절차 소년형사절차		
	집행 및 형사보상			



출제경향 분석

출제영역			문항수	총평 및 향후 수험전략
1편	0	형사소송법의 기초		1) 출제 유형별 분석 ① 순수한 조문(형소법·특별법)문제 : 6문제 ② 순수한 판례 문제 : 4문제 ③ 이론 문제 : 0문제 ④ 조문·판례 결합형 문제 : 10문제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편	6	수사기관, 피의자, 자문위원		2) 출제 방식별 분석 ① 틀린 것 찾는 문제 : 15문제 ② 옳은 것 찾는 문제 : 5문제 3) 문제 형식별 분석 ① 4지 선택형 문제 : 15문제 ② 박스형 문제 : 5문제 ③ 사례형 문제 : 0문제 ④ 사례+박스형 문제 : 0문제 4) 조문 : 판례의 출제 비중 ① 조문 : 60% ② 판례 : 40% 5) 출제 내용 분석 ① 경찰1차와 타 직렬 문제보다는 조문의 비중이 높았다. ② 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경찰1차와 타 직렬 보다는 낮았다. ③ 수사편과 공판절차편을 중심으로 고루 출제하였다. ④ 기준에 강조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100% 출제되었다. ⑤ 근자에 출제되지 않았던 증거법 이후 내용이 3문제가 출제되었다. 6) 총 평 ①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중(중중) 정도로 평가된다. ② 1차시험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되었다. ③ 기본강의와 기출문제집으로 복습 및 마지막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 수험생들은 무난히 고득점 했으리라 생각된다. ④ 합격권 점수는 85점 정도로 예상된다. 7) 2차 시험을 위한 조언 ① 이번 시험도 기준에 기출된 지문의 반복 출제가 주를 이루는 만큼, 기출된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및 이해하고 기출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 몇 몇 오답유형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본강의를 정확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 ③ 기출문제집의 정확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④ 조문(규칙 포함)과 판례(신판례 포함)의 유기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수사의 조건(합정수사)		
		수사의 단서 - 고소	1	
		임의수사	1	
		기술적 수사(감청)		
		대인적 강제처분	1(특채)	
		체포·구속된 자 보호제도	2	
		대물적 강제처분	1(특채)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1	
		수사의 종결 및 재정신청	1	
3편	1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제기의 효과	1(특채)	
		공소시효	1	
4편	10	기초지식		
		소송의 주체	3	
		심리범위 · 공소장변경		
		공판진행(준비,출석,조사,특칙)	3	
		증거	3	
		재판 - 기판력	1	
5편	2	상소 - 통칙 - 불이익변경	1	
		비상구제절차 - 재심	1	
6편	1	특별절차(-즉결심판절차)	1	
		집행과 형사보상		



무료 해설강의 일정 및 향후 시험대비 수험상담

일시·장소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19 : 30부터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상	형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누구나	

1.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③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④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해설 ①

- ① X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8조).
- ② O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을 갖는다.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므로 친족이甲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더라도 공범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③ O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판결 ④ O 제231조

2.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법원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③

- ㉠ ○ 제260조 제2항, 제3항 ㉡ ○ 제264조 제1항
㉢ ○ 대법원 1990.12.13, 자 90모58 결정 ㉣ ○ 제262조의3 제2항
㉤ X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본문).

3.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④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③

③ X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5항). 따라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08.27. 자 97모21 결정).

- ① O 제214조의2 제4항
- ② O 제214조의3 제1항
- ④ O 제214조의2 제1항

4.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경우에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④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동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④

④ X 검사는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와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동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따라서 관할지정의 신청은 검사만 가능하고 피고인은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 ① O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 ② O 제7조
- ③ O 제10조

5.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때에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 검사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해설 ②

- ㉠ ○ 제266조의11 제1항 ㉡ ○ 제266조의3 제1항 ㉢ ○ 제266조의4 제5항
 ㉣ X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01.24. 자 2012모1393 결정).
 ㉤ X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6. 피의자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신문에 있어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서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해설 ①

- ① X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② ○ 제244조의2 제2항 ③ ○ 제243조의2 제1항 ④ ○ 대법원 2013.7.1. 자 2013모160 결정

7.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④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③

- ③ X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습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03.09. 선고 2001도192 판결).
- ①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판결 ②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8125 판결
④ ○ 헌법재판소 1997.3.27, 96헌가11 전원재판부

8.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해설 ①

- ① X 법원은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00조의2 제1항). 과태료만 가능하고 감치에는 처할 수 없다.
- ② ○ 대법원 1997. 11. 27. 자 97모88 결정 ③ ○ 대법원 1990.4.18. 자 90모22 결정
④ ○ 규칙 제56조 제1항

9.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①

- ㉠ X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조사자증언제도를 도입하였다.**
- ㉡ X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5항, 제3항).**
- ㉢ O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O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 O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판결

9.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교전담 특채

- ① 수사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경우에는 그를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④

- ④ X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 ① O 제213조의2, 제200조의5 ② O 제213조 ③ O 제213조

1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해설 ③

- ③ 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08.19. 선고 2005도2617 판결).**
- ① O 대법원 20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④ O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11.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후는 불문한다.
-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②

② X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① O 제184조 제1항

③ O 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92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④ O 제311조

1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 ㉡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없음

해설 ②

㉠ O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제286조의2).

㉡ O 제286조의2

㉢ O 제318조의3

㉣ 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따라서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을 이유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 X 간이공판절차에서 증명력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2.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교전담 특채

-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 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②

- ② 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 즉,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과는 달리,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사후제시의 방법에 의한 긴급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O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③ O 대법원 1999. 12. 1. 자 99도161 결정 ④ O 제121조

1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④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해설 ③

- ③ X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도3212 판결).
 ① O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② O 제457조의2
 ④ O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14.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②

- ② X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02.07.12. 선고 2002도2029 판결).
 ① O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③ O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판결
 ④ O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15.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 ②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④

④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제1항, 제5항

- ① X 즉결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사건이다(동법 제2조).
- ② X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 ③ X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1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② 1심에서 송달불능이 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함에 있어서 1심에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 ④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해설 ④

④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5561 판결

① X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② X 대법원 1973.10.31. 선고 73도2124 판결

③ X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도3619 판결

1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④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②

② X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① ○ 규칙 제123조의8 제1항

③ ○ 제266조의7 제2항

④ ○ 제266조의8 제6항

18 다음 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년이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년이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년이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년이다.

- ① 21 ② 23 ③ 25 ④ 28

해설 ③

숫자의 합은 = 5 + 5 + 10 + 5 = 25년

- ㉠ 5년 ㉡ 5년 ㉢ 10년 ㉣ 5년

18.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교전담 특채

- 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③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④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①

- ① X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공범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제248조 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제253조 제2항).
 ② O 제253조 제1항 ③ O 제248조 제2항 ④ O 제249조 제2항

19.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해설 ④

- ④ X 공판개정후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따라서 질병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갱신을 요하지 않는다.

- ①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② O 제301조의2
 ③ O 제301조

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다.
- ②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④

- ④ X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9조 제2항).
 ① O 제420조, 제421조 ② O 제428조 ③ O 제432조

출간안내	2015년판 선택과 집중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1) 출간 예정일 : 2014년 10월 중 2) 2014년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 경찰1차, 국가직9급 3) 2014년 경찰2차, 국가직 7급 모두 반영 4) 최근 8개년 전직렬 기출문제 완벽반영 및 상세한 해설
	2015년판 선택과 집중 형사소송법 조문·판례집	1) 2014년 전직렬 기출지문 전면반영 2) 2014년 8월까지의 개정조문 전면 반영 3) 2014년 8월까지의 최신판례 전면 반영

계획	강의 장소	강의 일자
기출문제집 해설강의	서울(노량진) 남부경찰학원	11월 7일부터 18시 40분부터 22시 20분까지 8주간(예정)
조문·판례 강의	서울(노량진) 남부경찰학원	9월 26일부터 18시 40분부터 22시 20분까지 6주간(예정)
기본강의	서울(노량진) 남부경찰학원	형사소송법 기본강의 개강(10월 3일 개강)